

### 3. 최고영적지도자과정 운영규정

제정일 : 2007년 10 월 17 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개설하는 최고영적지도자과정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과정의 명칭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최고영적지도자과정(이하 "과정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운영)** ① 총장은 과정에 대한 교학, 회계, 기타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.

② 본교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교무위원회는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수강생의 정원, 입학 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
2. 담당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4조(수강생모집)** 이 과정의 수강생은 총장이 사전 공고하여 50명 내외로 모집한다.

**제5조(수강자격)**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
1. 교회와 사회의 참신한 지도급 인사
2. 기타 이 과정의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6조(지원절차)** 이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전형방법)** 과정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, 전형기준은 입학사정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수강기간)** 과정의 기수별 수강기간은 40주로 하되 4학기로 나눈다.

**제9조(개강)** 개강은 3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0조(수강등록)** 합격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등록금반환)**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

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기 납부된 등록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.

**제12조(출석)** 수강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시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1. 신병으로 인한 경우 :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
2.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경우 : 사망진단서 사본
3. 기타 부득이한 경우 : 해당 증빙서류와 총장의 승인으로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

**제13조(수료)** 학기별 수업일수의 7/10이상 출석한 자에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.

**제14조(증명서 발급)** 과정의 재학자 및 수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총장은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상훈 및 징계)** ①재학기간 중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수료시에 표창을 하며, 수료한 자에게는 본교 국제이사로의 위촉 및 국제이사회회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.

②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학칙 제44조에 의거 제적 및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자치회)**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되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자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17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